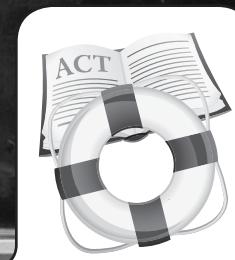


Understanding the Safe Schools Act



학교 안전법

학교에서의 학생의 행동에 관한 공식적 정책이 있나?

있습니다. 주정부 교육법(Education Act) 상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주정부의 행동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학교안전법**이라고 하며, 2008년 초에 발효되었습니다.

학교안전법의 요지는 정학 및 퇴학에 대한 것인가?

아닙니다. 학교안전법에 정학 및 퇴학의 사유가 되는 행동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법의 요지는 예방 및 조기 조정입니다.

- 모든 교육청 및 학교는 주정부 행동강령에 준하여 특정 행동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자체적 행동강령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 행동강령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교에 게시됩니다. 이 법은 '진취적 규율'을 강조합니다. 즉, 학교장은 특정 상황에 대해 가장 합당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면담, 쓰기 숙제, 상담 등이 그런 조치의 예입니다. 문제의 행동이 계속되거나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정학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퇴학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학교장이 정학 처분을 내릴 때는 해당 학생이 왜 문제의 행동을 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인종주의가 개입되었나? 괴롭힘이 있었나? 해당 학생이 특수교육 학생인가? 학교장은 반드시 이런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정학 처분이 학생의 교육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교사는 학생을 정학시킬 수 없습니다. 이 권한은 학교장에게만 있습니다. 퇴학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을 괴롭힐 경우 정학에 처해질 수 있나?

그렇습니다. 괴롭힘은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며, 학교 밖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행해질 경우도 해당됩니다. 모든 학교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안전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의 행동도 이 법에 의해 규제되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인터넷 상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위협할 경우, 이런 행동은 학교의 풍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최고 20일의 정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학에 처해지면 어떻게 되나?

- 학교장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24시간 내에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정학 처분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정학 사유, 정학에 처해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이의제기 권리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학 기간은 1-20일입니다. 정학 기간 중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으며, 과외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일 이상의 정학에 처해진 학생에게는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의에 맡겨집니다.
- 11일 이상의 정학에 처해진 학생에게는 학습 프로그램 외에 상담 등의 비학습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학 및 퇴학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이의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Understanding the Safe Schools Act

- 강제정학 기준에 의거하여 정학 처분을 내릴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퇴학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퇴학을 건의할 경우, 교육청은 퇴학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청문회에는 학교장, 해당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 퇴학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퇴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합니다.
- 퇴학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학생을 위해 학생조치계획(Student Action Plan - SAP)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SAP는 학교장이 교직원, 학생 및 부모와 협의하여 수립합니다. 학생조치계획은 목표, 성공을 위한 방안, 해당 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 명시됩니다.
- 정학 기간이 끝난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는, 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복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동 정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행동이 명시된 목록이 있나?

정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행동	반드시 정학 처분이 내려지고 학교장이 퇴학을 고려해야 하는 행동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위협	무기 소지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 소지	무기를 사용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알코올 섭취	의료인에 의한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교사 또는 다른 권한자에 대한 육설 행위	성폭행
교내 또는 학교 구내에서 학교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기물파손 행위	무기 또는 불법 약물의 거래
괴롭힘	강도 행위
학교장이 교육청 정책에 의거하여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타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알코올 제공
	학교장이 교육청 정책에 의거하여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교육청에 해당 학생의 퇴학을 건의할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타 행위

모든 교육청 및 학교는 자체적인 학교안전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정책은 각 학교 또는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eopleforeducation.com을 방문하십시오.